본 판결서는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서를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2-06-09

서 울 고 등 법 원

제 8 - 1 행 정 부

판 결

사 건	2021누57751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원고, 피항소인	학교법인 A
	소송대리인 변호사 [redacted]
피고, 항소인	[redacted]시 B구청장
제 1 심 판 결	서울행정법원 2021. 8. 18. 선고 2020구단72860 판결
변 론 종 결	2022. 3. 18.
판 결 선 고	2022. 4. 15.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20. 7. 10. 원고에 대하여 한 취득세, 지방교육세, 농어촌특별세 합계 34,348,56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본 판결서는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서를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2-06-09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 이유의 인용

피고가 당심에서 주장하는 내용은 아래 제2항의 보충 주장 외에는 제1심에서의 주장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아니한바, 피고의 주장을 제1심 및 당심에 제출된 증거들과 함께 다시 살펴보아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 따라서 이 법원이 이 판결에 기재할 이유는 아래 제2항에서 피고의 보충 주장에 대한 판단을 기재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보충 주장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1)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을 교육용 시설로 사용하기 위해 토지의 제한 사항과 각종 인허가를 위하여 상당한 시간이 소요됨을 인지하고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하였다.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유예기간인 '취득일부터 3년이 경과할 때까지' 교육사업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못한 것은 취득 이후 다른 예측하지 못한 사유가 발생한 것이 아니므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할 수 없다(이하 '제1주장'이라 한다).

2) 또한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 매입 후 I캠퍼스와 L캠퍼스 조성계획을 함께 추진해오던 중 지속적인 재정난을 겪게 되었고, 고민 끝에 I캠퍼스 조성계획을 무산시키고 그 토지를 매각한 후 그 자금을 L캠퍼스 조성에 사용하게 되면서 이로 인해 시간이 지

본 판결서는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서를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2-06-09

연된 것이다. 따라서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교육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진지한 노력을 다하였다고 볼 수 없다(이하 '제2주장'이라 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관련 법리

구 「지방세특례제한법」(2020. 1. 15. 법률 제1686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1조 제1항 제2호는 「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 「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외국교육기관 설립·운영에 관한 특별법」 또는 「기업도시개발 특별법」에 따른 외국교육기관을 경영하는 자가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2021. 12. 31.까지 면제하되,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3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면제된 취득세를 추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위 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정당한 사유'에는 법령에 의한 금지, 제한 등 납세의무자가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외부적인 사유는 물론 해당 용도로 사용하기 위한 정상적인 노력을 다하였으나 시간적인 여유가 없어 유예기간을 넘긴 내부적인 사유도 포함된다. 그리고 이러한 정당한 사유의 유무를 판단할 때에는, 납세의무자에 의하여 수행되는 사업의 공익성을 감안하여 취득세를 부과하지 않은 입법 취지를 충분히 고려하면서 토지의 취득목적에 비추어 그 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데 걸리는 준비기간의 장단, 목적사업에 사용할 수 없는 법령상·사실상의 장애사유 및 장애정도, 납세의무자가 목적사업에 사용하기 위한 진지한 노력을 다하였는지 여부, 행정관청의 귀책사유가 가미되었는지 여부 등을 아울러 참작하여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본 판결서는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서를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2-06-09

(대법원 1996. 1. 26. 선고 95누13104 판결, 대법원 2002. 9. 4. 선고 2001두229 판결, 대법원 2017. 8. 18. 선고 2017두42293 판결 등 참조).

라. 구체적 판단

1) 제1주장에 대하여

가) ① 원고는 고등교육을 실시함을 목적으로 C대학교를 유지·경영하는 학교법인으로 2015. 12. 15. 교육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한 사실, ② [redacted]시장은 2019. 3. 14. 이 사건 부동산 등에 관하여 [redacted]시 고시 N로 도시계획시설(학교) 및 세부시설조성계획(기본계획) 변경결정과 그 지형도면을 고시한 사실, ③ 원고는 환경영향평가를 완료한 후 2019. 11. 13. 피고에게 건축허가신청을 하였고, 피고는 2020. 7. 17. 원고의 학교시설 건축 및 증축에 대한 건축허가신청을 수리하였으며, 이 사건 부동산은 현재 C대학교의 학교부지로 사용되고 있는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나) 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2021. 1. 12. 법률 제1789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국토계획법'이라 한다) 제2조 제4호, 제6호 및 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2021. 7. 6. 대통령령 제318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국토계획법시행령'이라 한다) 제2조와 「도시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제2조, 제88조 제2호 등은 기반시설로서의 학교 중 대학을 도시계획시설로 규정하고 있고, 구 국토계획법 제30조, 제43조, 구 국토계획법시행령 제22조 제7항 제3호 바.목 등은 학교 중 대학의 설치·정비 또는 개량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을 할 경우 해당 지방의회의 의견과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등을 거쳐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따라서 기반시설로서의 학교 중 대학인 C대

본 판결서는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서를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2-06-09

학교를 유지·경영하는 학교법인인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교육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한 개발행위를 진행하고자 할 경우에는 먼저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등을 거쳐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학교)을 변경하고, 관할 지방자치단체와 환경영향평가, 교통영향평가, 안전영향평가 등의 행정절차를 진행하여야 한다.

다) 앞서 든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볼 때,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한 이후의 행정절차과정 등을 시간순으로 요약하면 아래와 같다.

1. 2016-06-08 원고의 도시계획시설(C대학교) 변경결정 신청
2. 2016-08-19 B구청장의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학교) 변경결정(안) 신청에 따른 보완 요청
3. 2016-08-25 원고의 도시계획시설(C대학교) 변경결정관련 보완서 제출
4. 2016-09-07 B구청장의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학교) 변경결정(안) 열람공고 알림
5. 2016-09-28 B구청장의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학교) 변경결정(안) 열람공고에 따른 의견 통보
6. 2016-09-29 원고의 도시계획시설(C대학교) 변경결정관련 열람공고 보완서 제출
7. 2016-10-11 B구의회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학교) 변경을 위한 의견청취안(원안가결)
8. 2016-11-16 B구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도시계획시설(학교: C대학교) 변경결정(안) 자문: 원안자문]
9. 2016-11-29 B구청장의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학교) 변경결정 진행사항 알림
10. 2017-02-23 서울시의회(도시계획관리위원회)의 [redacted]시 도시계획시설(학교) 변경결정에 대한 의견청취안 심사보고서
11. 2017-04-27 원고의 세부시설조성계획 변경결정 신청
12. 2017-05-23 [redacted]시장의 도시계획시설(학교) 및 세부시설조성계획 변경결정(안) 관련부서 협의결과 통보(C대학교)

본 판결서는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서를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2-06-09

13. 2017-06-13 원고의 도시계획시설(학교) 및 세부시설조성계획 변경결정 보완서 제출
14. 2017-07-21 원고의 도시계획시설(학교) 및 세부시설조성계획 변경결정 보완서 제출
15. 2017-09-14 [redacted]시장의 도시계획시설(학교) 및 세부시설조성계획 변경결정, 지형도면 고시 예정 알림
16. 2017-09-21 [redacted]시장의 [redacted]시고시 M '도시계획시설(학교) 변경 및 세부시설조성계획(기본계획) 변경결정·지형도면 고시'
17. 2018-05-15 원고의 O 앞 건물 설계 입찰 시행
18. 2018-10-02 원고의 O 앞 건물 설계 계약 체결
19. 2019-01-15 원고의 세부시설조성계획 변경결정 신청
20. 2019-02-21 [redacted]시장의 세부시설조성계획 변경신청에 따른 관련부서 협의의견 통보
21. 2019-02-25 원고의 세부시설조성계획 변경결정 보완서 제출
22. 2019-03-08 원고의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용역 입찰 시행
23. 2019-03-11 [redacted]시장의 도시계획시설(학교) 세부시설조성계획 결정(변경)·지형도면 고시 예정 알림(C대학교)
24. 2019-03-14 [redacted]시장의 [redacted]시고시 N '도시계획시설(학교) 세부시설조성계획(기본계획) 결정(변경)·지형도면 고시(C대학교)'
25. 2019-03-29 원고의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용역 재공고 입찰결과 보고 및 계약 체결
26. 2019-08-02 원고의 C대학교 신·증축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서 제출
27. 2019-08-08 원고의 소규모 지하안전영향평가 용역 입찰 시행
28. 2019-08-21 원고의 소규모 지하안전영향평가 용역 입찰결과 및 계약 체결
29. 2019-08-27 원고의 C대학교 신·증축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보완 제출
30. 2019-11-13 원고의 O 앞 건물 신축 건축허가신청서 제출
31. 2019-11-13 원고의 O 앞 건물 신축에 따른 교통영향평가 변경 용역 시행
32. 2019-11-14 원고의 C대학교 신·증축 소규모 지하안전영향평가서 제출
33. 2019-12-03 B구청장의 C대학교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서 제출에 따른 알림

본 판결서는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서를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2-06-09

34. 2019-12-09 원고의 C대학교 신·증축 교통영향평가 변경신고서 제출
35. 2019-12-27 B구청장의 C대학교 교통영향평가 변경(허용인정범위 초과) 심의 결과 회신
36. 2020-01-03 B구청장의 C대학교 신·증축 교통영향평가 변경신고(초과) 처리 통보
37. 2020-01-08 B구 건축위원회의 심의(재검토의결)
38. 2020-01-22 B구 건축위원회 심의(보완의결)
39. 2020-03-15 원고의 C대학교 신·증축 소규모 지하안전영향평가서 보완서 제출
40. 2020-03-25 B구 건축위원회 심의(조건부의결)
41. 2020-03-30 B구청장의 지하안전영향평가서 협의결과 회신 알림(C대학교)
42. 2020-07-17 B구청장의 건축·대수선·용도변경 허가서(건축구분: 증축)

라) 원고가 진행한 행정절차는 [redacted]시와 B구 등 지방자치단체의 각종 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하고 심의과정에서 위원회가 요청한 보완의 이행을 위한 협의가 필요하며, 또한 위와 같은 심의를 진행하기 전 환경영향평가, 교통영향평가, 지하안전영향평가 및 이와 같은 영향평가 절차를 진행하기 위한 관련업체 선정을 위한 입찰 등의 행정절차가 필요하여 학교법인을 운영하는 원고가 관계 법령을 이미 알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위와 같이 상당한 행정절차의 진행에 소요되는 기간을 정확히 예측하는 것은 어렵다고 보인다.

마) 앞서 본 사정 등을 관련 법리와 종합하여 보면, ①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학교용지로의 용도변경과 건축허가가 가능하였고 비록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일인 2015. 12. 15.부터 3년이 경과할 때까지 교육사업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이 교육용 시설의 건축절차가 지연된 것은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 위에 도시계획시설인 교육용 시설을 건축하기 위해 [redacted]시장의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과 이를 위한 관계도면의 작성, B구 건축위원회의 심의 등 행정절차를 진행하

본 판결서는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서를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2-06-09

여야 하고 이를 준비하기 위한 업체선정을 위한 입찰과 관련 보고서의 작성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었기 때문으로 보이는 점, ② 또한 이를 위해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 이후 도시계획시설의 변경 및 건축을 위한 절차를 순차로 진행하여 왔고, 2017. 9. 21. 도시계획시설(학교) 변경 및 세부시설조성계획 변경결정·지형도면이 고시됨으로써 이 사건 부동산을 학교 부지로 사용할 수 있게 된 이후 설계계약의 체결, 환경영향평가 및 교통영향평가를 진행하는 등 교육용 시설의 건축을 위한 일련의 필요절차를 진지하고 꾸준하게 밟아 나간 것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에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교육용 시설의 건축을 완공하는 등 교육사업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관계 법령상의 제한을 해결하기 위하여 정상적인 노력을 다하였음에도 그 유예기간을 도과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위 유예기간이 경과할 때까지 교육사업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바) 따라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제2주장에 대하여

갑 제15, 49, 50, 51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원고는 2020. 1. 2.경 서울 H 소재 I캠퍼스 부지에 대하여 '학교법인 A 교육용 기본재산 처분허가신청'을 하였고, 이에 교육부장관은 2020. 2. 22.경 원고에게 처분금의 용도를 C대학교 교비회계로 전출하는 것을 조건으로 I캠퍼스 부지에 대하여 '학교법인 A 교육용 기본재산 처분허가'를 한 사실, ② 원고는 교육부장관의 위 처분허가에 따라 입찰매각공고 등을 거쳐 2020. 7.경 I캠퍼스 부지를 매각한 다음, 교육부장관의 허가조건에 따라 매각대금을 교비회계로 전출한 사실, ③ 한편 원고가 L캠퍼스 부지에 기숙사를 신

본 판결서는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서를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2-06-09

축한 다음 이에 대해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친 시점은 2015. 1. 26.인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의 제2주장과 같이 원고가 I캠퍼스 조성계획을 무산시키고 그 토지를 매각한 후 그 자금을 L캠퍼스 조성에 사용하게 된 것으로 볼 수는 없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여야 한다. 이와 결론을 같이하는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redacted]

판사 [redacted]

판사 [redacted]

본 판결서는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서를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2-06-09

[별지]

관계 법령

■ 구 지방세특례제한법(2020. 1. 15. 법률 제1686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1조(학교 및 외국교육기관에 대한 면제)

① 「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 「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외국교육기관 설립·운영에 관한 특별법」 또는 「기업도시개발 특별법」에 따른 외국교육기관을 경영하는 자(이하 이 조에서 "학교등"이라 한다)가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숙사는 제외한다)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2021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면제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2.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3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 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2021. 1. 12. 법률 제1789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4. "도시·군관리계획"이란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 또는 군의 개발·정비 및 보전을 위하여 수립하는 토지 이용, 교통, 환경, 경관, 안전, 산업, 정보통신, 보건, 복지, 안보, 문화 등에 관한 다음 각 목의 계획을 말한다.

다. 기반시설의 설치·정비 또는 개량에 관한 계획

6. "기반시설"이란 다음 각 목의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말한다.

라. 학교·공공청사·문화시설 및 공공필요성이 인정되는 체육시설 등 공공·문화체육시설

7. "도시·군계획시설"이란 기반시설 중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된 시설을 말한다.

제28조(주민과 지방의회의 의견 청취)

⑤ 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는 도시·군관리계획을 입안하려면 대통령령

본 판결서는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서를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2-06-09

으로 정하는 사항에 대하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제30조(도시·군관리계획의 결정)

① 시·도지사는 도시·군관리계획을 결정하려면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하며, 국토교통부장관(제40조에 따른 수산자원보호구역의 경우 해양수산부장관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도시·군관리계획을 결정하려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이 경우 협의 요청을 받은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의견을 제시하여야 한다.

② 시·도지사는 제24조제5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입안하여 결정한 도시·군관리계획을 변경하거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에 관한 도시·군관리계획을 결정하려면 미리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도시·군관리계획을 결정하려면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며, 시·도지사가 도시·군관리계획을 결정하려면 시·도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시·도지사가 지구단위계획(지구단위계획과 지구단위계획구역을 동시에 결정할 때에는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에 관한 사항을 포함할 수 있다)이나 제52조제1항제1호의2에 따라 지구단위계획으로 대체하는 용도지구 폐지에 관한 사항을 결정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축법」 제4조에 따라 시·도에 두는 건축위원회와 도시계획위원회가 공동으로 하는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⑤ 결정된 도시·군관리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1조(도시·군관리계획 결정의 효력)

① 도시·군관리계획 결정의 효력은 제32조제4항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한 날부터 발생한다.

제43조(도시·군계획시설의 설치·관리)

② 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의 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고, 그 세부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시·도의 조례로 정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법률에 따른다.

■ **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2021. 7. 6. 대통령령 제318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본 판결서는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서를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2-06-09

제2조(기반시설)

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6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당해 시설 그 자체의 기능발휘와 이용을 위하여 필요한 부대시설 및 편익시설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4. 공공·문화체육시설 : 학교·공공청사·문화시설·공공필요성이 인정되는 체육시설·연구시설·사회복지시설·공공직업훈련시설·청소년수련시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반시설의 추가적인 세분 및 구체적인 범위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제22조(주민 및 지방의회의 의견청취)

⑦ 법 제28조제5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다만, 제25조제3항 각 호의 사항 및 지구단위계획으로 결정 또는 변경결정하는 사항은 제외한다.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반시설의 설치·정비 또는 개량에 관한 도시·군관리계획의 결정 또는 변경결정. 다만, 법 제48조제4항에 따른 지방의회의 권고대로 도시·군계획시설결정(도시·군계획시설에 대한 도시·군관리계획결정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해제하기 위한 도시·군관리계획을 결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바. 학교 중 대학

■ 도시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의 기준과 동법시행령 제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기반시설의 세분 및 범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도시계획시설결정의 범위)

① 기반시설에 대한 도시관리계획결정(이하 "도시계획시설결정"이라 한다)을 함에 있어서는 당해 도시계획시설의 종류와 기능에 따라 그 위치·면적 등을 결정하여야 하며, 시장·공공청사·문화시설·도서관·연구시설·사회복지시설·장례식장·종합의료시설 등 건축물인 시설로서 그 규모로 인하여 특별시·광역시·시 또는 군(광역시의 관할구역에 있는 군을 제외한다. 이하 같다)의 공간이용에 상당한 영향을 주는 도시계획시설인 경우에는 건폐율·용적률 및 높

본 판결서는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서를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2-06-09

이의 범위를 함께 결정하여야 한다.

② 항만·공항·유원지·유통업무설비·학교(「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 따른 학교에 한정한다) 및 운동장에 대하여 도시계획시설결정을 하는 경우에는 그 시설의 기능발휘를 위하여 설치하는 중요한 세부시설에 대한 조성계획을 함께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서 해당 법률에 따른 허가, 승인, 인가 등을 받음에 따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른 도시관리계획의 결정을 받은 것으로 의제되는 경우에는 그 시설의 기능발휘를 위하여 설치하는 중요한 세부시설에 대한 조성계획은 해당 도시계획시설사업의 실시계획 인가를 받기 전까지 결정할 수 있다.

제88조(학교)

이 절에서 "학교"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3.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학교. 다만, 같은 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원격대학 중 사이버대학 및 같은 법 제30조에 따른 대학원대학은 제외한다.

■ 고등교육법

제2조(학교의 종류)

고등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학교를 둔다.

1. 대학
2. 산업대학
3. 교육대학
4. 전문대학
5. 방송대학·통신대학·방송통신대학 및 사이버대학. 끝.